

'92. 구유재산관리계획변동동의안

의안 번호	83
----------	----

제출년월일 : 1992년 7월 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92년도 5월 7일 구의회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이후 신청받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것임.

2. 주요골자

'92.세출예산에 사회복지관 부지확보를 위하여 6억원을 확보 하였으나 부지를 물색지 못하여 당초계획에 동의받지 못한 취득재산과 대부분 20년이상 소규모 필지를 점유 사용하여 매각신청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92 당초동의
 - 취 득 : 2건 13필지 908.7m²
 - 매 각 : 27건 35필지 1,533.8m²
- '92 변경(추가) 동의안
 - 취 득 : 1건 1필지 258m²
 - 매 각 : 7건 9필지 496.6m²

구유재산관리계획
1992년도 관리 계획 총괄표(6-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	계	토지				1	258	600,000	1	258	600,000	
	1. 매입	토지				1	258	600,000	1	258	600,000	
매	계	토지				7	496.6	682,930	1	496.6	682,930	
	2. 매각	토지				7	496.6	682,930	1	496.6	682,930	
기 타												

취득대상재산현황

연번 : 1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 산 의 표 시			취득대상 면적(m ²)	소 유 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적(m ²)			
영등포1동 618-42	대 지	258	258	개인(김철기)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취 득 후 용 도	비 고
주거용으로 집주인 거주	복지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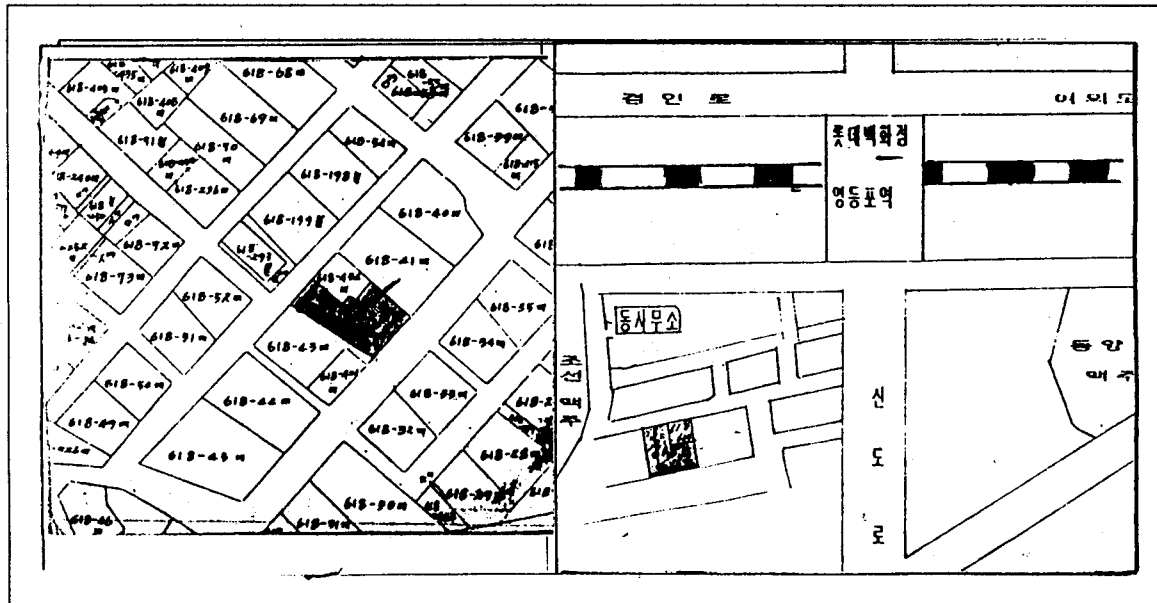
3. 취 득 사 유

- 도시영세민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제공
- 저소득층의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학습장(공부방) 제공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4. 소 요 예 산

600,000,000 원 (6억)

5. 현 황 도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1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상 면적(m ²)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주 소	성 명		
대림동604-130 603-5	대지	10 69	79	영등포구 대림3동604-130	모 예 심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주택, 담장안에 위치하고 있음.	준 공업지역으로 2m 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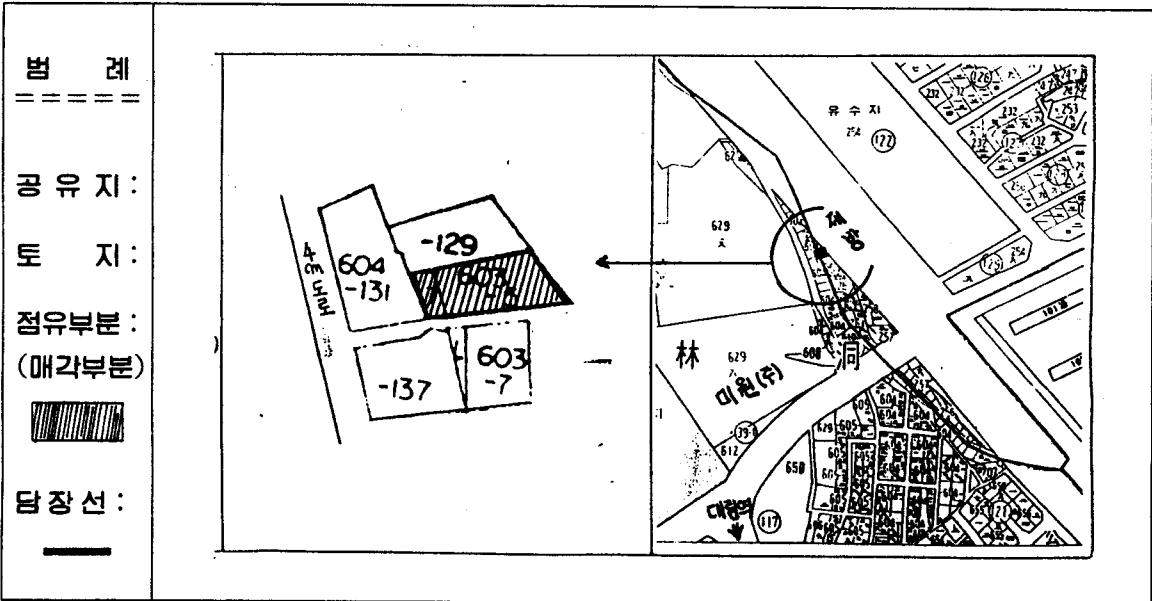
3. 처 분 사 유

- 상기 구유재산은 매수신청인(모예심)이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하고 있음.
- 20년 이상 점유
-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2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 산 의 표 시			매 각 상 대 면 적(m ²)	매 수 신 청 인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면적(m ²)		주 소	성 명	
신길1동94-46	대지	5	5	영등포구 신길동94-22	오 무 용	

2. 재산관리현황

관 리 상 태(현용도)	토 지 의 특 성	비 고
점유인의 담장 안에 점유	일반주거지역으로 4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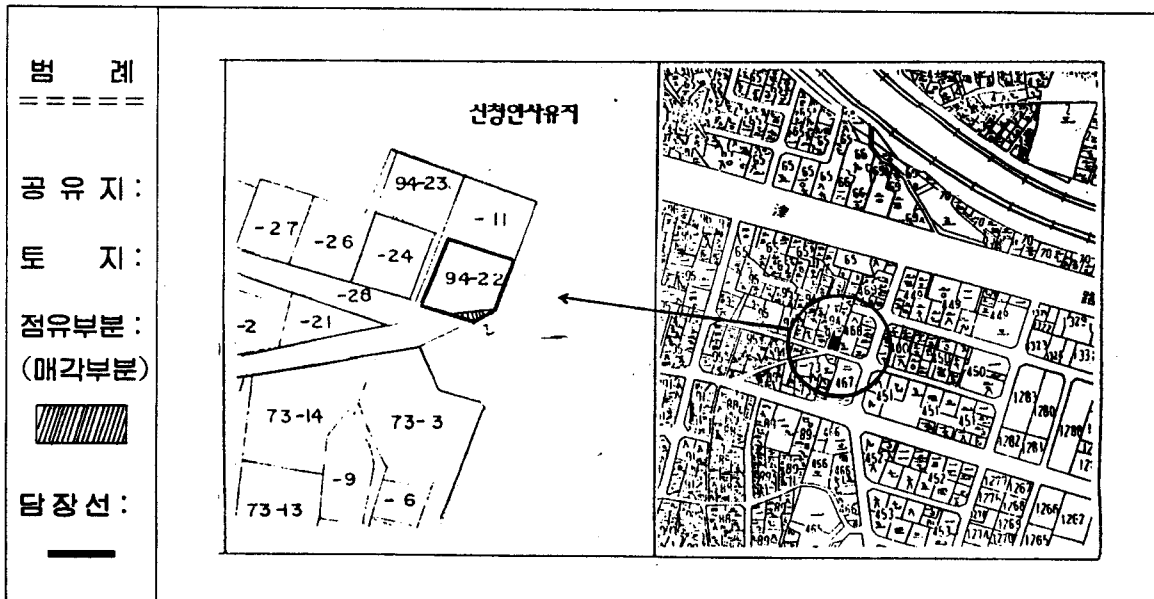
3. 처 분 사 유

- 상기 구유재산을 매수신청인(오무용)이 담장안에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
-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 분 근 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

5. 현 황 도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3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상 면적(m ²)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주소	성명		
대림3동604-131	대지	106	106	영등포구 대림동604-131	이혜중	

2. 재산관리현황

관리상태(현용도)	토지의 특성	비고
주거용 건물로 점유 사용	준공업지역으로 4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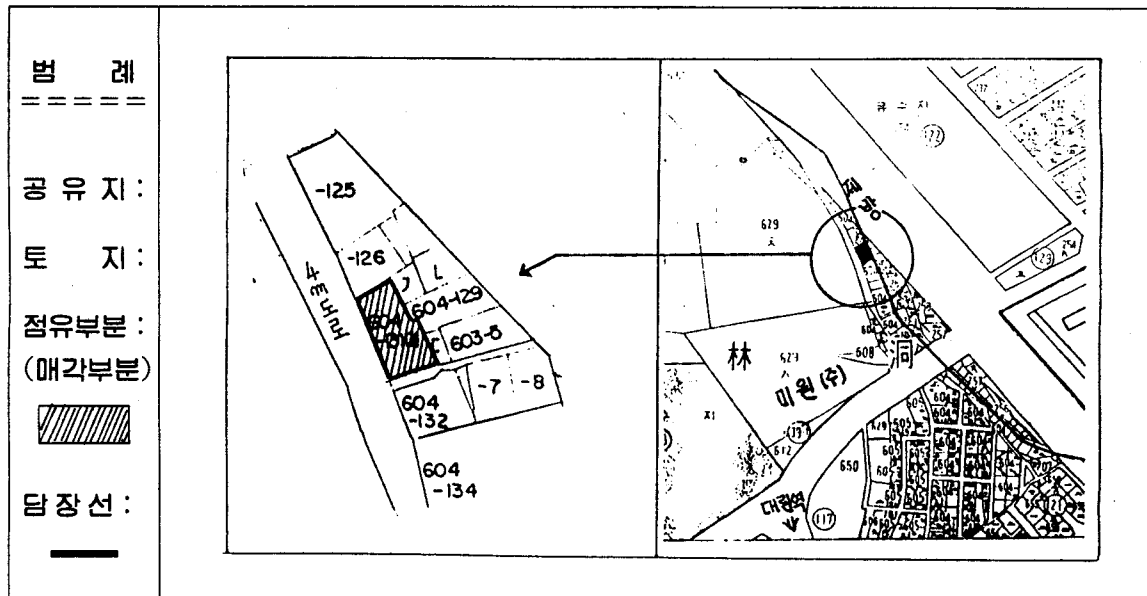
3. 처분 사유

- 상기 구유재산을 매수신청인(이혜중)이 주거용건물로 점유 사용
- 20년 이상 점유(특정건축물신고등재)
-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분 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2호

5. 현황도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4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상 대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²)	면적(m ²)	주소	성명	
신길3동362-26	대지	81	81	종로구 경운동 9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	

2. 재산관리현황

관리상태(현용도)	토지의특성	비고
나대지 상태로 점유	일반주거지역 사업시행지구 안에 위치	

3. 처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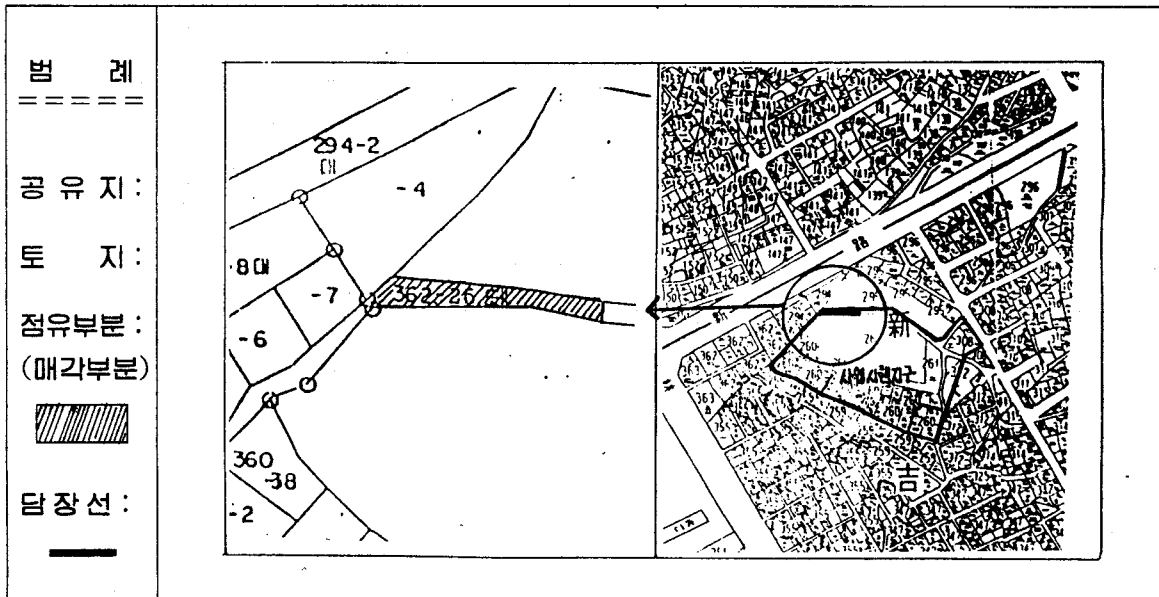
○ 상기 구유재산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 외 3개조합에서 매수하여 신축코자 함.

- 사업시행내역 총면적 : 12,624m²
 대상세대 : 3개동(321세대)
 시행처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 외 3개조합

4. 처분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2호,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 1호

5. 현황도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5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상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²)	면적(m ²)	주소	성명	
신길1동193-22	대지	13	13	영등포구 신길동196-33	정광준	

2. 재산관리현황

관리상태(현용도)	토지의 특성	비고
주거용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	일반주거지역으로 4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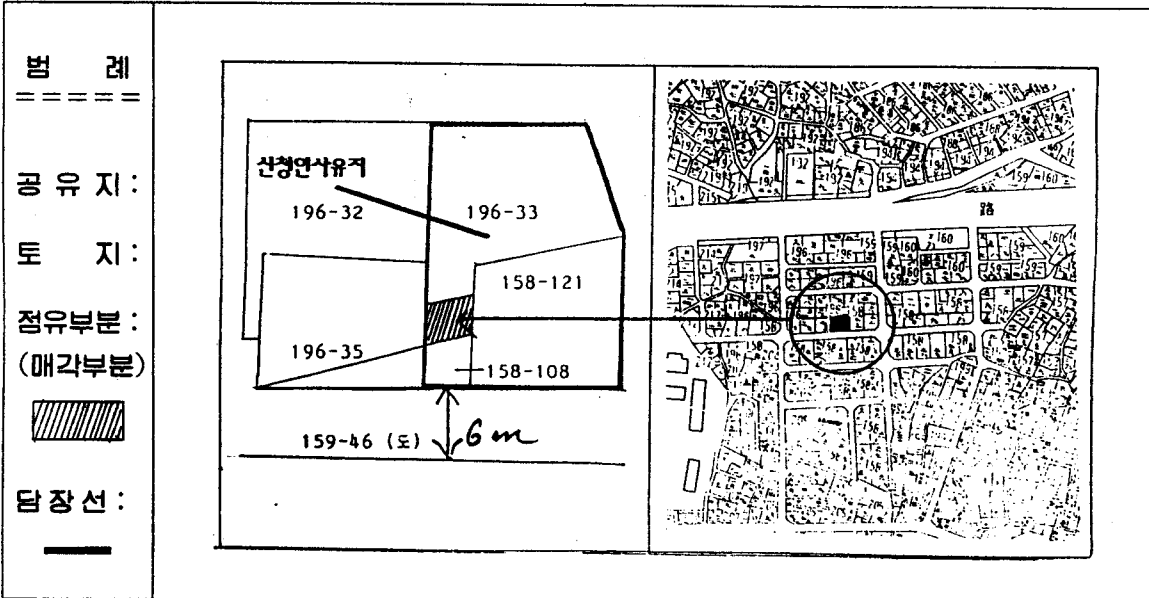
3. 처분사유

- 상기 구유재산을 매수신청인(정광준)이 주거용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
- 10년 이상 점유
-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분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

5. 현황도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6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상 면적(m ²)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주소	성명	
신길6동475-2	대지	184.6	184.6	동작구 대방동395-2	안성기	

2. 재산관리현황

관리상태(현용도)	토지의 특성	비고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	일반주거지역으로 8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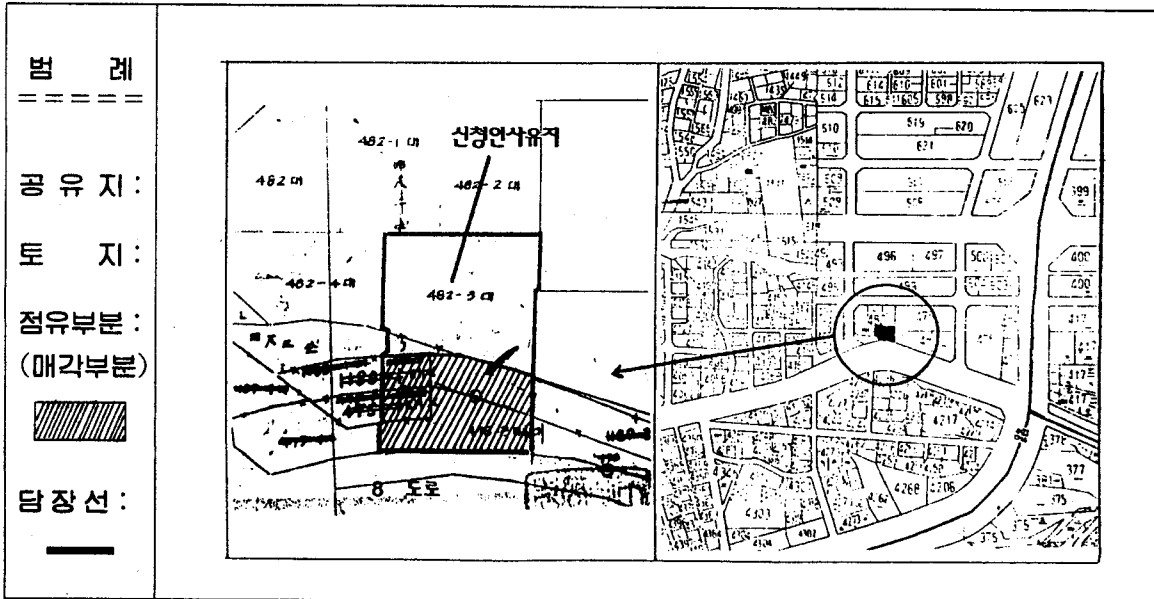
3. 처분 사유

- 상기 구유재산을 매수신청인(안성기)이 나대지(주차장) 상태로 점유 사용
- 10년 이상 점유
-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분 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4호, 제7호

5. 현황도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 7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대상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²)	면적(m ²)	주소	성명	
대림1동906-117 126	대지	20 8	28	영등포구 대림동907-50호	강영진	

2. 재산관리현황

관리상태(현용도)	토지의특성	비고
주거용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	일반주거지역으로 12m도로에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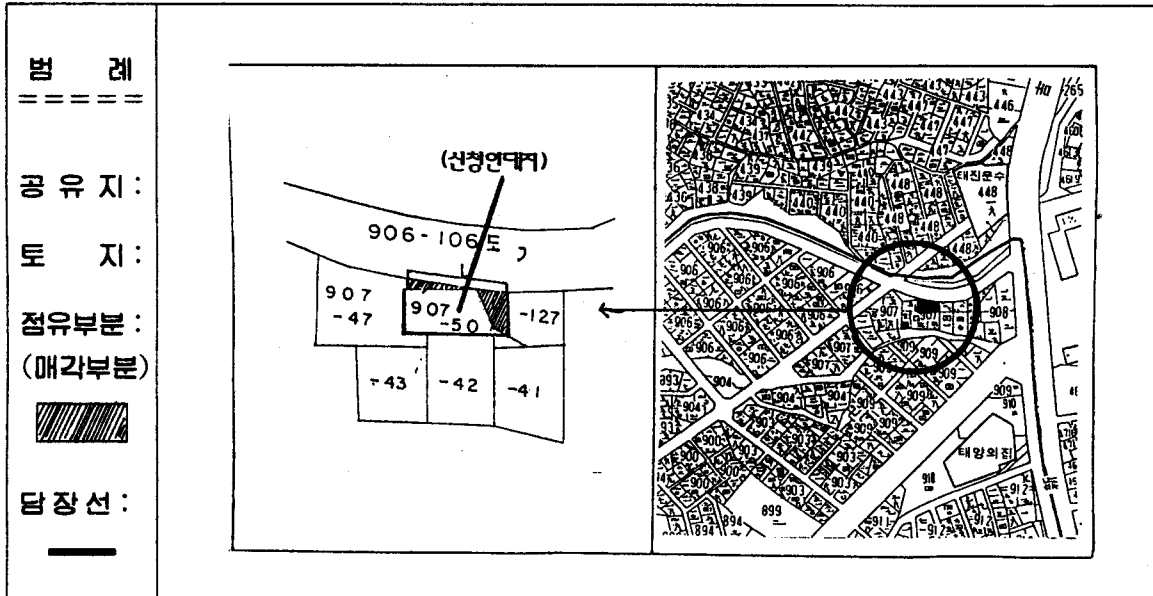
3. 처분사유

- 상기 구유재산을 매수신청인(강영진)이 주거용건물과 담장안에 점유 사용
- 15년 이상 점유(건물은 등기부등재)
-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 신청

4. 처분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제2호

5. 현황도



다음은 페이지 31. 연번 5번, 매각대상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1동 139-22번지. 위치로 봐서는 한보칼라 뒷편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매수신청하신 분은 그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정광준씨로서 현재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점유되어 있는 그런 토지로 1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번 6번. 賣却對象財産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길6동 475-2번지로서 면적은 184.6㎡입니다. 위치는 동작세무서 부근이 되었고 買受를 신청하신 분은 동작구 대방동 395-2에 사는 안성기라는 분이 賣却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그 도면을 보시면 460-3 대지는 신청인이 현재 자기 개인 사유지로 가지고 있고, 그 사유지에는 3층짜리 여관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買受申請을 한, 賣却申請을 한 그앞에 빗금친 부분의 토지는 여관에서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買受를 신청한 안성기씨가 지난 '88년부터 '89년 1년간에 걸쳐서 사용료 대부료를 내고 그 액수가 199만원을 내고 주차장으로 '89년 8월29일까지 대부 받아서 사용했던 토지입니다.

다음은 賣却對象財産 연번 7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소재지는 대림1동 906-117, 126 2필지로서 대상면적은 28㎡고 매수신청은 영등포 대림동 907-50호에 사시는 강영진씨입니다. 현재 이 토지는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점유·사용되고 있으며 15년 이상 신청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상으로써 取得財産 1건과 賣却對象財産 7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基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熙中 專門委員으로부터 이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專門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熙中 專門委員입니다.

'92舊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유재산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생산적인 시설물을 건립운영하여 영세노인의 여가선용 및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장 제공등을 통하여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영등포1동 618-42 대지 258㎡를 취득하여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 6억원은 구비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내역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參 考〉

위치	규모	용도	비고
영등포1동 618-42	·대지: 258㎡(78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어린이집: 지하1층 지상1층 ·노인정: 2.3층 ·독서실: 4층	대지는 '92년도 구입 하고, 건축은 '93예산 원성 건축

둘째, 구유재산중 장차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하되,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는 재산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재투자를 위해서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림동 604-130, 603-5 대지 79㎡의 5건은 매수자가 담장이나 건물등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신길동 362-26 대지 81m²은 경제기획원 주택조합에서 매수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주택건설 촉

진법 제24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參考>

매각대상재산내역

매각재산의표시			매수신청인		현용도
지번	지목	면적(m ²)	주소	성명	
대림동 604-130 603-5	대	10 69	대림동 604-130	모예심	담장안점유
신길1동 94-46	대	5	신길동 94-22	오무웅	담장안점유
대림3동 604-131	대	106	대림동 604-131	이해중	건물로점유
신길1동 193-22	대	13	신길동 196-33	정광중	담장안점유
신길6동 475-2	대	186.6	동작 대방 395-2	안성기	주차장활용
대림1동 906-117 126	대	20 8	대림동 907-50	강영진	담장안점유
신길3동 362-26	대	81	종로 경운동 90	경제기획원 직장조합	나대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基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楊雲燮 委員 질의 한 번 할게요.

○委員長 金東基 양운섭위원님

○楊雲燮 委員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낭독을 해주셨는데 두번째 구유재산중 장차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하되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는 재산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재투자를 위해서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재산은 어떤 것인지 이걸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專門委員 金熙中 매각할 재산은 주로 건

물이나 점유자의 건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용도를 점유하고 있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한테 賣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매각하고 순수하게 나대지로 있을 때에는 그런 거를 규모가 큰것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순수하게 나대지로 있을 때는, 그런것은 규모가 큰 것은 (청취불능)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楊雲燮 委員 그러며는 여기에서 오늘 매각하겠다고 한 이 토지중에서 신길3동 362-26 81 경제기획원직장주택조합 나대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길6동 475-2 186.6m² 요것은 매각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專門委員 金熙中 제 의견으로서는 가능한